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가. 을숙도문화회관은 서부산권의 유일한 종합예술공간으로 2002. 10월 개관한 이후 타 문화회관과 사용료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나. 대공연장 규모(좌석수)가 당초 설계와 다르게 표시되어 변경하려는 것임.

다. 전시실을 규모 및 위치상 누구나 알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 별표 1의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과 관련하여

1)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시실(I, II, III)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나. 대공연장 규모(좌석수) 변경 : 797석 → 708석(장애인석 8석 별도)

다. 전시실 명칭 변경 : 제1전시실(108.9m²) → 제2전시실

제2전시실(261.36m²) → 제1전시실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을숙도문화회관이 2002. 10월 개관한 이후 시설의 일부를 당초설계상의 수치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8조 1항 별표 1중. 대공연장 규모를 797석 → 708석(장애인석별도)으로 변경하고,
- 전시, 관리동 중 제1전시실, 제2전시실을 면적의 크기에 따라 제2전시실을 → 제1전시실로 하고, 제1전시실을 → 제2전시실로 변경하는 것과
- 전시실의 사용료가 타 문화회관보다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타 문화회관의 사용료와 형평에 맞게 낮추려는 것으로,
- 시설규모 및 명칭 변경은 현실과 통상적인 사고의 원리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사용료 인하문제는 타 문화회관 사용료와 형평성 고려도 중요하겠지만 수익적인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2003. 10.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